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03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적 검토	4
1. 제정안의 법체계 및 주요 내용	4
2. 총괄적 검토의견	9
3. 관계 부처 등 의견	15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7
1.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등	17
2. 급식안전관리정책의 수립 및 급식제공시설 등의 관리	22
3. 급식안전관리 지원 등	35
4. 벌칙	43
5. 부칙	50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24.
- (3) 회 부 일 : 2024. 12. 26.

2.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양질의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정 외에 공동 생활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새로운 돌봄수요가 생겨나면서 소규모 급식 제공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급식관리 체계는 시설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급식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고, 위생 및 영양 관리 기준이나 지원 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에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급식의 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급식정책의 통합·조정 및 급식관리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을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수준과 식생활이 개선되도록 급식제공시설의 종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급식안전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급식안전관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정책 및 공통 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

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운영·관리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Ⅱ.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법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급식의 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급식정책의 통합·조정 및 급식관리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제정안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급식안전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집단급식소의 관리, 급식안전관리 지원 등 총 6개 장과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급식안전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제7조(급식안전관리 협의체 설치) 제8조(실태조사) 제3장 집단급식소의 관리 제9조(급식안전관리기준 등) 제10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11조(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제12조(영양사) 제13조(조리사) 제14조(영양사 조리사 교육)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급식안전관리 지원 등 제16조(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지도) 제19조(급식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0조(역량강화 지원) 제21조(현장 맞춤형 지원) 제5장 보칙 제22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수수료)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영양사·조리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정안은 ‘급식’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급식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급식안전관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급식안전관리정책 및 공통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업무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식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제공시설의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 다섯째,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급식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도록 하고,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10조).

- 여섯째,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각각 두도록 하되,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거나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등에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1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일곱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여덟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에게 급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아홉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제공시설의 장 등의 신청을 받아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제 정 안 의 주 요 내 용 요약 >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조문(안)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급식정책 통합·조정 및 급식관리지원을 통해 급식 품질 향상 및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제2조(정의)	■ 급식(가정 밖에서 비영리목적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계속하여 음식물 제공), 관계중앙행정기관(급식시설 소관부처) 등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급식이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급식 현황 파악 및 급식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 예산 확보 등
제4조(국민의 권리 등)	■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 급식안전관리정책 참여 및 정보 알 권리 ■ 급식 종사자 등의 안전한 급식 제공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급식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름 ■ 급식에 관한 법령 제·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제2장 급식안전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협의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매년 자체 시행계획) * 식생활 변화·전망, 정책 목표·추진방향, 제도·법령개선, 지원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증진, 개선방안 조사·연구 등
제7조(급식안전관리 협의체 설치)	■ 급식정책 협의·조정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식약처장 의장) ■ 정책실무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제8조(실태조사)	■ 정책 및 공통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급식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위탁, 국가지원)
제4장 집단급식소의 관리	
제9조(급식안전관리기준 등)	■ 식약처장이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공통기준 수립·고시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공통기준에 따라 급식제공시설 운영 이루어지도록 노력
제10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집단급식소(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운영자 신고 의무
제11조(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수사항
제12조(영양사)	■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영양사 고용 의무 및 예외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제13조(조리사)	■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조리사 고용 의무 및 예외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
제14조(영양사·조리사 교육)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조리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집단급식소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용
제4장 급식안전관리 지원 등	
제16조(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의무(지자체장)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급식제공시설 종사자 등 급식안전관리 지도·교육, 급식제공시설 이용자 식생활 교육, 급식안전관리 정보 제공·홍보 등
제17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 등을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식약처장)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총괄,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급식안전관리 교육자료 등 연구·개발, 급식제공시설 유형별 식단·조리법 개발·보급, 급식안전관리 정보 제공·홍보,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등
제18조(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지도)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식약처장)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평가(식약처장, 지자체장)
제19조(급식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체계적인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급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민에게 다양한 급식안전정보 제공, 정부정보망 구축
제20조(역량강화 지원)	■ 급식 종사자 등 역량강화 지원(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국가 지원)
제21조(현장 맞춤형 지원)	■ 신청 급식제공시설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국가지원)
제5장 보칙	
제22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자료요청 및 협조 의무
제23조(권한의 위임)	■ 급식지원을 위한 일부 업무를 지방청,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24조(수수료)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자의 수수료 납부 의무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26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27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제28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양벌규정)	■ 법인 및 개인에게 벌금형 부과
제30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규정(1천만원 이하)

2. 총괄적 검토의견

□ (급식 관련 현행법 체계) 급식과 관련하여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만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① 기숙사, ②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③ 병원,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⑤ 산업체,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④ 그 밖의 후생기관 등)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한정되고 있음.

< 집단급식소의 신고대상 >

구 분	신고대상 기준
설치목적	비영리성
급식대상	특정 다수인
대상시설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인원 수	1회 50명 이상

□ 2023년 기준 집단급식소 급식 인원은 총 1,186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인원이 885만 명(7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업체로 161만 명(13.6%)임.

< 집단급식소 급식인원 현황(2023년 기준) >

유형	급식인원(명)	비율(%)
기숙사	7,087	0.1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8,851,102	74.6
병원	602,073	5.1
사회복지시설	348,344	2.9
산업체	1,608,248	13.6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334,753	2.8
그 밖의 후생기관등*	110,350	0.9
계	11,861,957	100

* 기타: 학원, 산후조리원, 수련원, 체육시설 등

□ 집단급식소 대상시설 중 급식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시설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가 있고, 그 외 시설들은 가령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경우 「학원법」, 병원의 경우 「의료법」, 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보건법」 등 각 개별법령에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그런데, 집단급식소 대상시설 중 신고대상인 급식시설¹⁾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²⁾되는 등 통합된 급식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신고대상이 아닌 급식시설(1회 50명 미만)은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시설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1) 법제처 법령해석(2017.3.13.)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서 1회 50명 이상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교정시설은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군대의 경우도 특수목적 조직체로 「식품위생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식약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참고로, 「학교급식법」의 경우 급식 안전에 관한 기준이 집단급식소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식품위생법령의 위생·안전 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부 시설(기숙사, 산업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이 없어, 신고대상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 집단급식소 대상시설별 관련 법률 현황 >

구 분		시설별 관련 법률
집단급식소 대상시설	기숙사	-
	학교	학교급식법
	유치원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병원	의료법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숙인복지법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등	모자보호법(산후조리원)

□ 또한,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종교단체 급식시설, 무료급식소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와 같이 현행 급식관리 체계는 시설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급식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고, 위생 및 영양 관리 기준이나 지원 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바,

이에 제정안은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은 급식의 위생과 영양 등 안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재도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해당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³⁾는 급식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실시 근거를 두고 있는바,

급식 관련하여 추가로 규정할 사항들이 있다면 해당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을 동법에서 삭제하고, 제정안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	제정안
제2조(정의)제12호(집단급식소 정의) 및 제15호(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제10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88조(집단급식소)		제11조(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제51조(조리사)		제13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12조(영양사)
제56조(교육)		제14조(영양사·조리사 교육)
제92조(수수료)제9호(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		제24조(수수료)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제3호·제4호

3)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환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다만, 제정안과 「식품위생법」의 차이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그 대상을 ‘특정 다수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 급식시설, 무료급식소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제공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제정안은 제2조(정의)제1호에서 “급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 ‘가정 밖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시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런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의 확대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식품위생법」에서 이관되어 규정되는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을 제외하면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급식 관련 규정은,

- ① 급식안전관리 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급식안전관리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급식안전관리협의체의 설치·운영, ③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④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급식안전관리기준의 수립·고시, ⑤ 급식관련업무종사자의 역량강화지원, ⑥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맞춤형지원, ⑦ 급식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있음.

- 둘째, 제정안의 적용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동 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집단급식소 외에 동 제정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고시하는 급식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시설은 개별법령에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시설, 예를 들면, 군부대, 교정시설, 소방, 경찰, 소규모 산업체·종교시설·무료급식소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시설의 성격과 운영형태가 상이하고,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 급식안전관리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총괄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넷째, 제정안과 관련하여, 소방청은 국가 차원의 통합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등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급식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나, 각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대상자와 특성에 맞는 급식 안전관리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대상별 맞춤형 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 급식에 관한 정책을 통합·규정하는 법률의 추가 제정은 현장 혼란 가중과 각 개별법령을 근거로 한 사업의 목적과 대상 및 특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등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 분산된 급식안전관리를 통합·조정 및 지원하여 전반적인 급식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2) 소방청

- 국가 차원의 통합된 급식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등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급식환경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정안 취지에 동의함.

(3) 교육청

- (경기도·대전·경남)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위생·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급식 안전관리 기준 제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 법률 제정은 학교현장의 업무 가중 및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 법을 적용받는 대상에 학교급식의 대상인 학교와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을 제외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함.
- (인천) 급식은 급식 대상에 따라 급식의 목적과 방향성, 운영형태가 상이하며, 각 소관 기관의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 급식시설의 규모와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급식관리 기준이 모호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급식시설

에 대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급식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됨.

- (부산) 현재 급식 전반 관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설립 목적별·부서별·개별법에 맞게 급식안전관리 지도 및 식생활교육, 영양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춤형 관리에 역행하는 처사임
- (강원·전북·경북)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 법률 제정은 현장의 혼란 초래 및 업무가중과 맞춤형 관리에 역행하는 처사임. 제정법과 같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생·영양 관리 기준 및 지원 체계의 규정은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침해함.
- (제주) 제정안은 「학교급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의 다수 조항이 중복되어 있으며,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어 기존에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간 관리 기준 충돌로 학교 현장에 혼란과 혼선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업무가 과중을 초래할 우려가 큼.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등

가. 내용

□ 제정안은 급식안전관리의 통합·조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관리 및 지원의 대상인 ‘급식’과 협의의 대상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용어를 정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제공시설의 종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급식안전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며,

급식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급식의 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급식정책의 통합·조정 및 급식관리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가정 밖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소방청·질병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을

제 정 안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수준과 식생활이 개선되도록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급식제공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급식의 위생과 영양 등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급식안전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등 급식안전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안전관리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급식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③ 급식제공시설의 장, 종사자 및 식품공급자 등 급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급식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는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급식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급식의 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⁴⁾에서는 집단급식소의 개념적 요소로 비영리성, 특정 다수인, 계속적 음식물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바, 무료급식소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 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급식”에 대하여 ‘가정 밖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급식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제공시설의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급식을 이 법에 따른 관리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의) 한편, 제정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소방청·질병관리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4)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급식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가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급식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급식의 경우 급식안전관리에 관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 기타에서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위생·안전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법」이 제정안보다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영양사, 조리사 배치기준, 조리실 시설기준, 위생기준, 영양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준 등은 제정안보다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과 동 법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급식안전관리정책의 수립 및 급식제공시설 등의 관리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관리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제공시설 등에 출입하여 급식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정안에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 정 안
제6조(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2. 급식안전관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급식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급식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기반조성 5. 급식안전관리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6. 급식제공시설의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7. 급식안전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8. 급식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급식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정 안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급식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급식안전관리협의체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급식안전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급식안전관리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정책 및 공통 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급식안전관리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하 “급식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식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제공시설의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제공시설 등에 출입하여 급식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지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제공시설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목적·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제 정 안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급식제공시설(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그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기숙사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 병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5. 산업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제 정 안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사용하지 말 것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사용하지 말 것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사용하지 말 것
8.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1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

제 정 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5. 주 3회 미만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기 이하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한 급식계획서(이하 “집단급식소 식단”이라 한다)의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매 급식마다 집단급식소의 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따라 조리된 식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식을 실시하며 배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3. 식재료 등 구매식품의 위생상태, 보관온도 준수여부 등을 검수하여 급식에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매식품을 관리할 것
4. 집단급식소의 식단, 식수인원, 위생상태 점검현황 등이 포함된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할 것

제 정 안

것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자 · 내용 ·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할 것

제13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4. 주 3회 미만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기 이하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식품위생법」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사용 · 조리하지 말 것
3.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등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할 것

제14조(영양사 · 조리사 교육) 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1년마다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야 한다.

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집단급식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나. 검토의견

□ (급식안전관리기준 수립·고시 등) 안 제9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하 “급식안전관리기준”이라 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령에 영양사, 조리사 배치 등 인력기준, 급수시설 등의 시설기준,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수사항 등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령에 영양사, 조리원 배치기준, 조리실 등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등 각 부처 소관 급식제공시설의 경우도 일부 개별법령에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종교단체 급식제공시설, 무료급식소 등은 이와 같은 기준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관리기준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급식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제공시설의 운영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위생 및 영양기준 등이 없는 급식제공시설의 경우에도 제정안에 따른 급식안전관리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려는 것임.

□ 다만, 제정안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급식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대상은 주로 소규모 또는 재정이 열악한 급식제공시설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지나치게 엄격한 급식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할 경우 준수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한 급식안전관리기준 수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제공시설 등에 출입하여 급식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지도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급식제공시설에는 신고대상인 집단급식소와 신고대상이 아닌 급식제공시설이 모두 포함되므로, 미신고대상인 급식제공시설에 대하여 신고대상인 집단급식소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의 범위 관련)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목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후생기관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그 밖에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0조제1항은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등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급식제공시설을 “집단급식소”로 약칭하고 있는데,

제2조제1호에서 “급식”에 대하여 가정 밖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바, “급식”이라는 용어에 다수인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으므로, 안 제10조제1항의 ‘다수인에게’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집단급식소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에 따른 집단급식소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급식제공시설이 포함되는데, 식약처고시로 종교시설 또는 무료급식소를 집단급식

소 시설로 고시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규정이 준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 범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식품위생법」 및 제정안에 따른 집단급식소 비교 >

식품위생법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u>집단급식소</u>”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u>그 밖의 후생기관 등</u>	제10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u>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급식제공시설(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그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u> 1. 기숙사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 병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5. 산업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7.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u>

-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관련) 안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는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영양사)를 삭제하고, 같은 법률 제51조(조리사)에서 집단급식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제정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와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 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면,

제정안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주 3회 미만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기 이하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⁵⁾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을 각각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주 3회 미만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기 이하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운영하는 노숙인급식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조(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운영 등)제2항에 따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하려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바,

제정안에서 노숙인급식시설에 대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영양사 및 조리사 관련 규정 비교 >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정안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제1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5. 주 3회 미만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기 이하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정안
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제13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4. <u>주 3회 미만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기 이하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u> 5. <u>「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u>

3. 급식안전관리 지원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에게 급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제 정 안
제16조(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제공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급식안전관리 지도 및 교육 2. 급식제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3.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급식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제 정 안

- ③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총괄
2.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4. 급식제공시설 유형별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5.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19조에 따른 급식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급식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국가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정 안

매년 1회 이상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에게 급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급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제공시설의 운영 정보 등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역량강화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련업무종사자의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이하 “역량강화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역량강화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맞춤형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제공시설의 장 등의 신청을 받아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현장 맞춤형 지원(이하 “맞춤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맞춤형 지원의 신청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출의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 정 안
2. 실태조사의 실시 3. 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20조에 따른 역량강화지원 3. 제21조에 따른 맞춤형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국가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나. 검토의견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미 운영 중인 경우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함) 제5조6)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그 중 일부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항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제정안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6)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내용을 동 제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 ⑤ (생략)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6조7)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8)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데,

제정안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기관 간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급식안전관리 운영 지원 총괄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만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사회복지시설급식법」

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6.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운영)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9. (생략)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및 제정안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과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중앙 차원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4. 벌칙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벌칙, 안 제29조는 양벌규정, 안 제30조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 정 안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식품위생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한 자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7조(벌칙)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직무를 허위로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

제 정 안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9항을 위반한 자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에서 준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 (영양사 및 조리사 처벌 규정 관련)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조리사 및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각각 규정⁹⁾하고 있으며,

동법 제96조¹⁰⁾에서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¹¹⁾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집단급식소에 근무하

9)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10) 「식품위생법」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단순위헌, 2019헌바141, 2023.3.23,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1) 2019헌바141, 헌재 2023. 3. 23.

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하였음.

□ 이에 제정안은 영양사 및 조리사의 직무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제 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각각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안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 영양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과 제정안을 비교해 보면, 「식품위생법」 제51조(영양사) 및 안 제12조(영양사)는 각각 제1항에서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식품위생법」은 제96조(벌칙)에서 제5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안 제1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영양사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8조(벌칙)에서는 제12조제2항제1호(집단급식소 식단의 작성)·제2호(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또는 제4호(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의 직무를 허위로 수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안 제30조(과태료)에서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를 들어 영양사가 안 제12조제2항제2호(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를 허위로 수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제3호(식재료 등 구매식품의 위생상태, 보관온도 준수여부 등을 검수하여 급식에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매식품을 관리할 것)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를 허위로 수행한 경우’와 ‘식재료 등 구매식품의 위생상태, 보관온도 준수여부 등을 검수하여 급식에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매식품을 관리할 것’을 위반한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영양사의 직무가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별 위반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처벌의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은 집단급식소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조리사 및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동법 제9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안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제2항에서 「식품위생법」 제96조를 삭제하면서 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제정안에 규정하지 않은바,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영양사 및 조리사 직무 관련 규정 및 벌칙 비교 >

식품위생법	제정안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1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한 급식계획서(이하 “집단급식소 식단”이라 한다)의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매 급식마다 집단급식소의 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따라 조리된 식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식을 실시하며 배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3. 식재료 등 구매식품의 위생상태, 보관온도 준수여부 등을 검수하여 급식에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매식품을 관리할 것 4. 집단급식소의 식단, 식수인원, 위생상태 점검현황 등이 포함된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할 것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자·내용·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할 것

식품위생법	제정안
제51조(조리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조리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식품위생법」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3.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등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할 것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직무를 허위로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부칙

가. 내용

-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며,
- 안 부칙 제3조는 영양사·조리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안 부칙 제4조는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며,
- 안 부칙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규정을 두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등 관련 조문이 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정리하려는 것 등임 (안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의 시설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양사·조리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양사와 조리사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부칙

제5조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으로, “제56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88조제3항”을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집단급식소”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조리사 등”을 “조리사”로 한다.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조리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법률 제2034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에게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제16호 중 “제51조제1항”을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88조”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을 “경우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제56조”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85조제1호 및 제8호 중 “제88조”를 각각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집단급식소에서”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89조제3항제7호 중 “집단급식소”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88조”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조”로 한다.

제9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72조제1항·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7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1.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한 자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2호 중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경우”로, “제72조제1항·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7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99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6호 중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나. 검토의견

□ (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의 시설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는 향후 제정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등이 바뀌는 경우에도 계속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만 따르면 되는바, 유예기간을 두고 이 법(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집단급식소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사람’을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법률의 개정) 안 부칙 제5조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6호 중 “제51조제1항”을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88조”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규정되도록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동 제정안 제10조에서 집단급식소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식품위

생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한 식품위생법 개정 전후 >

식품위생법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한 식품위생법 개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15.(생략)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15.(현행과 같음) 16.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주요국별 급식관리 체계

- 집단급식 위생적인 측면은 주로 식품위생 담당기관(미 FDA 등)에서 소관·관리
- 학교급식은 별도 법률에 따라 운영, 영양공급·식생활교육 등 취지에 따라 농무부, 교육부에서 소관·관리

구분	미국	영국	일본
집단급식	관련 규정 ▶ 집단급식 관리 규정 없음 ※接客업소 위생관리 FDA 소관	식품기준청(Food safety agency) 소관 「식품안전법」	후생노동성 소관 「식품위생법」 - 대량조리시설위생관리 매뉴얼
	영업 신고 ▶ 집단급식 미신고 * 카페테리아 등 비영리 급식시설 신고대상 아님	집단급식 신고여부 미확인	집단급식(특정급식) 신고 * 1회 100식 이상 또는 1일 250식 이상
	관리 방법 ▶ 학교급식의 경우, - 주정부·지자체 위생 담당기관에서 연2회 점검	지자체 위생담당부서에서 급식 위생관리(식중독관리)	지자체(도도부현)에서 관리 ·감독 총괄 ▶ 1회 300식 또는 1일 750식 이상 제공 조리시설에 대해 HACCP 기반 관리
학교급식	규정 ▶ 42USC13 학교점심급식 ▶ 7CFR210 국립학교점심급식 ▶ 7CFR220 학교아침급식 * 식재료 품질, 식단 구성, 영양성분, 정부보조금 등과 일부 위생 관련 사항 규정	학교급식규정 2014 학교급식기준 지침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식단기준, 영양성분 등 안내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실시기준 * 영양소 섭취량, 식단구성 등
	관리 조직 ▶ (연방) 농무부 식품영양국 (Food and nutrition service of department) ▶ (주정부) 주로 교육부 (일부 보건부) ▶ (지자체) 학교급식위원회	(중앙)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 (지자체) 건강보호팀 및 교육기준청	(중앙) 문부과학성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료시설	▶ 연방규정(42CFR):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관련 조문에 선언적으로 언급 *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 기준 충족 등	건강사회복지법에 따라 관리 * 식품기준청에서 급식위생 영양 기준 등 보급	의료법에 따라 관리 * 특정급식시설에 의료기관이 포함, 후생노동성에서 위생·영양관리

【참고 2】 급식제공시설별 관리현황('24.10. 기준)

구분	집단 급식소	교(보)육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산업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복지시설					병원	산후 조리원	종교 시설	무료 급식소	군대	교정시설	범죄 피해자	경찰	소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대학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숙인									
법률	식품 위생법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학원법	고등 교육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산업안전법 근로기준법	공공기관 운영법	아동 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노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노숙인복 지법	의료법	모자 보호법	-	-	군인급식 규정	형 집행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경찰 복지법	소방공무원 복지법
소관 부처	식약처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산업부	기재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문체부	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법무부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영업 형태	신고	인가	인가	인가	등록	인가	허가	승인(공장)	-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허가	신고	-	-	-	-	-	-	-
인력 기준	영양사 조리사	의무 (법)	100명 이상 1명 (규칙)	100명 이상 1명 (법)	의무 (법) (영)	(기숙학원) 1명 이상 (영)	-	-	-	30명 이상 1명 (영)	50명 이상 1명 (규칙)	50인 이상 1명 (규칙)	50명 이상 1명 (규칙)	50명 이상 1명 (규칙)	1명 이상 (입원시설有) (규칙)	30명 이상 1명 (규칙)	-	-	-	-	-	-	-
		의무 (법)	40명 이상 1명 (규칙)	의무 (법)	의무 (법)	-	-	-	-	10명 이상 1명 (영)	1명 (규칙)	1명 (규칙)	1명 (규칙)	30명 이상 2명 (규칙)	-	1명 (규칙)	-	-	-	-	-	-	-
시설 기준	16 (규칙)	4 (규칙)	30 (규칙)	26 (규칙)	7(숙박) (영)	-	5 (규칙)	-	-	5 (규칙)	2 (영)	1~7 (규칙)	5(규칙)	-	3 (규칙)	3 (규칙)	-	-	-	-	1 (영)	-	-
위생 기준	31 (법·규칙·고시)	12 (규칙)	25 (규칙)	25 (규칙)	-	-	-	-	-	7 (규칙)	-	4 (규칙)	-	2 (규칙)	7 (규칙)	2 (법, 영)	-	-	-	14 (예규)	-	-	-
영양 기준	-	1 (규칙)	8 (규칙)	8 (규칙)	-	-	-	-	-	1 (규칙)	-	-	0~1 (규칙)	2 (규칙)	4 (규칙)	-	-	-	-	6 (예규)	-	-	-
기준 인원	50인이상	-	-	-	-	-	-	-	-	-	-	10~50인	30~50인	-	30인	30인	-	-	-	-	-	-	-
시설 수	-	28,954개	8,405개	12,292개	130,470개	424개	856개	2,099,955개	4,267개	5,450개	625개	89,643개	3,925개	142개	4,235개	456개	927개	1,318개	-	53개	77개	2,303개	3,224개
(집단)	46,362개소	10,700개소	3,709개소	11,247개소	241개소	784개소	222개소	11,850개소	1,974개소	196개소	6개소	2,100개소	610개소	35개소	4,088개소	19개소	58개소	80개소	-	-	-	-	-
이용자	-	1,011,813	529,282	5,223,844		2,901,761	4,538,935	18,835,715	1,593,681	137,496	25,571	358,447	48,765	8,956	724,511명상	9,045실	21,553,674	-	500,000	48,990		131,158	66,797
(집단)	11,861,957	863,385	516,106	7,088,566	37,073	383,045	39,852	1,608,248	334,753	15,172	632	222,786	64,795	6,459	602,073	1,083	9,823	11,907	-	-	-	-	-
출처	집단급식소 현황('23)	보육 통계 (23)	교육 통계 (23)	교육 통계 (23)	전국학원 교습소 표준데이터 (23)	교육 통계 (23)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24)	산업체 노동 실태 현황 (22)	공공기관·지자체·정부조직·정보시스템 (24), (24), (23)	아동 복지시설 현황('19), 지역아동 센터통계 (22)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통계('23)	노인복지 시설현황 (22)	장애인 복지 시설 일람표 (22)	전국아동 복지시설 현황 (23), 노숙인 실태조사 (21)	전국병원 현황 (23), 입원진료 병상수 (22)	전국 산후 조리원 현황 (22)	한국의 종교 현황 (18)	전국무료 급식소 표준 데이터 (23)	남북 군사력 현황 (22)	교정 통계연보 (22)	법무부 홈페이지 (24)	경찰청 홈페이지 (24)	소방청 통계 연보 (24)